

신주 발행 공고

당사는 상법 제 416 조에 의거, 2016 년 06 월 22 일 및 2016 년 07 월 21 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.

- 다 음 -

1. 신주의 종류와 수 : 기명식 우선주식 22,472,000 주(신주의 1 주당 액면가액: 5,000 원)
2. 신주에 관한 사항 :
 - (1) 의결권에 관한 사항 : 의결권 없음
 - (2)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:
 - 1) 우선배당금 : 우선배당금은 액면가액에 우선배당률을 곱하여 산정하며, 우선배당률은 다음과 같음.

기간	우선배당률
2016.01.01 ~ 12.31	(주당발행가/주당액면가) X 4.0%
2017.01.01 ~ 12.31	(주당발행가/주당액면가) X 3.8%
2018.01.01 ~ 12.31	(주당발행가/주당액면가) X 3.5%
2019.01.01 ~	(주당발행가/주당액면가) X 3.0%*

* 단 2019.01.01 이후 위 우선배당률에 따라 산정된 우선배당금이 보통주 주당 배당금에 50 원을 가산한 금액보다 작을 경우에는 보통주 주당 배당금에 50 원을 가산한 금액을 신주의 1 주당 우선배당금으로 함.

- 2) 누적적 : 어느 사업연도에 상기에 따른 우선배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, 그와 같이 배당받지 못한 금액을 완전히 배당받을 수 있을 때까지 차기 이후의 사업연도의 배당시 보통주식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음. 단, 본 주식과 기존에 발행한 우선주식의 배당순위는 같음
 - (3) 상환 및 전환에 관한 사항 : 별도의 상환권 및 전환권은 부여되지 않음
 - (4) 존속기간 : 무기한
3. 신주의 발행방법 :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중자방식(잔액인수)
4. 신주의 발행가액 : 우선주 괴리율 40%, 할인율을 15 %로 하여 증권의 1 차 발행가액, 2 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산정한다(단,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, 1 주당 발행가액이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로 한다). 다만,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165 조의 6(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) 및 증권의발행및공시 등에관한규정 제 5-15 조(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)에 의거하여 1 차발행가액과 2 차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 3 거래일부터 제 5 거래일까지의 당사 보통주식 가중산술평균주가에 40%의 우선주 괴리율과 40%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 3 거래일부터 제 5 거래일까지의 당사 보통주식 가중산술평균주가에 40%의 우선주 괴리율과 40%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한다.
5. 신주의 배정기준일 : 2016 년 08 월 11 일
6. 명의개서 정지기간 : 2016 년 08 월 12 일 ~ 08 월 19 일
7. 신주의 배정방법 :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,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수주는 우선적으로 초과청약자에게 배정되며, 이후 실권이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에게 공모한다. 단, 정관에 의거 보통주식 및 우선주식을 보유한 구주주에게 우선주식을 배정한다.
 - (1) 우리사주조합 우선배정 : 신주의 20%를 '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' 제 165 조의 7 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한다.
 - (2) 구주주 청약 :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구주주에게 소유주식 1 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.2584547069 주의 비율로 배정(단, 1 주 미만은 절사)한다.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1 주당 배정비율이 변동될 수 있다.
 - (3) 구주주(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)는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 수량을 한도로 증서청약을 할 수 있고,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(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)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, 구주주(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)가 초과청약(초과청약비율 : 배정 신주 1 주당 0.2 주 배정)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실권주를 배정하며, 1 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는다. (단,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% 배정)
 - (4) 일반공모 청약 : 우리사주조합, 구주주 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아래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, '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' 제 9 조 제 2 항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잔여주식의 10%를 배정하며, 나머지 90%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한다. 다만,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,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한다. 배정수량 계산시에는 청약사무 취급처에 청약된 청약주식수를 모두 합산하여 동일한 배정비율로 통합배정한다.
 -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 사 6 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.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,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.
 - 일반공모를 거쳐 배정 후에도 미 청약된 잔여주식에 대하여는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잔액인수할 예정이며, 세부적인 사항은 잔액인수계약서에 따른다.
 - 단, 대표주관회사는 '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' 제 9 조 제 2 항에 의거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,000 주 이하(액면가 5,000 원 기준)이거나,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 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.
8. 신주의 청약증거금 : 청약금액의 100%
9. 신주의 청약기간
 - (1) 우리사주조합의 청약기간 : 2016 년 09 월 26 일 (1 일간)
 - (2) 구주주 청약(초과청약 포함) : 2016 년 09 월 26 일 ~ 2016 년 09 월 27 일 (2 일간)
 - (2) 일반공모 청약 : 2016 년 09 월 29 일 ~ 2016 년 09 월 30 일 (2 일간)
10. 주금납입일 : 2016 년 10 월 05 일
11. 주금납입처 : ㈜우리은행 한화금융센터
12. 신주의 배당기산일 : 2016 년 01 월 01 일
13.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
 - (1) 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를 허용함.
 - (2)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을 예정임.
 - (3) 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.
 - (4)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또는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: 한국투자증권(주), NH 투자증권(주)
14. 청약취급처
 - (1) 우리사주조합 : 한국투자증권(주), NH 투자증권(주) 본, 지점
 - (2) 구주주 중 실질주주 : 주권을 예약한 증권회사와 한국투자증권(주), NH 투자증권(주) 본, 지점
 - (3) 구주주 중 명부주주 : 한국투자증권(주), NH 투자증권(주) 본, 지점

- (4) 일반공모 청약자 : 한국투자증권(주), NH투자증권(주) 및 한화투자증권(주) 본, 지점
15. 신주권 교부예정일 : 2016년 10월 18일
16. 신주권 상장예정일 : 2016년 10월 19일
17. 기타사항
- (1)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(<http://www.hanwhacorp.co.kr>)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함.
 - (2)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 납입금으로 대체하며,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음.
 - (3)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음.
 - (4)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.
 - (5) 기타 본 건 신주 발행과 관련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.

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6
(주)한화 대표이사 박재홍

명의개서 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